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1월 02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47%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70%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1월 02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47%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70%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유로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형 C-PE, C-P2E 수익증권 신설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1월 0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PE : BZ440 종류 C-P2E : BZ441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2.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3. 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2. 종류 C-PE 수익증권 13. 종류 C-P2E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P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C-P2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4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보수	**주석사항** 종류 S, W C-P, C-P2, C-F, AG,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사항** 종류 S, W C-P, C-P2, C-F, AG, CG, C-PE, C-P2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C-P2E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 **펀드코드**

<table>
<tr><td>사항</td><td></td><td><table><tr><th>(종류형 명칭)</th><th></th></tr><tr><td>C-PE</td><td>BZ440</td></tr><tr><td>C-P2E</td><td>BZ441</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PE, C-P2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r><td>C-PE</td><td>BZ440</td></tr><tr><td>C-P2E</td><td>BZ441</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1월 02일
- 종류형 C-PE, C-P2E 수익증권 신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PE, C-P2E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able><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E, C-P2E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able><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종류 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able>
</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C-P2E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E, C-P2E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E, C-P2E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급비율(연간, %)</th></tr>
<tr><th>종류 C-PE</th><th>종류 C-P2E</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20%</td><td>0.20%</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0.30%</td><td>0.24%</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0.03%</td><td>0.03%</td></tr>
<tr><td>일반사무 관리보수</td><td>0.02%</td><td>0.02%</td></tr>
<tr><td>보수합계</td><td>0.55%</td><td>0.49%</td></tr>
<tr><td>기타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
<tr><td>총보수및비용</td><td>0.55%</td><td>0.49%</td></tr>
<tr><td>합성총보수및비용</td><td>1.17%</td><td>1.11%</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PE, C-P2E 신설></td><td>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C-PE</td><td>120</td><td>378</td><td>663</td><td>1,508</td></tr><tr><td>종류 C-P2E</td><td>114</td><td>359</td><td>629</td><td>1,431</td></tr></table></td></tr>
<tr><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China증권자투자신탁(제1호) [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형 C-P, C-PE, C-P2, C-P2E, W 수익증권 신설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1월 0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P : BZ443 종류 C-PE : BZ444 종류 C-P2 : BZ445 종류 C-P2E :BZ446 종류 W : BZ447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3.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4.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5. 종류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16. 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17. 종류 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3. 종류 C-P 수익증권 14. 종류 C-PE 수익증권 15. 종류 C-P2 수익증권 16. 종류 C-P2E 수익증권 17. 종류 W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9.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C-P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9.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9.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C-P2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9.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7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9.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2. 종류 C1, C-F, C-E, CG 및 S 수익증권	제2항 2. 종류 C1, C-F, C-E, CG, S, C-P, C-PE, C-P2, C-P2E 및 W 수익증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주석사항 · 종류 C2~C5, C-F, S, AG 및 C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주석사항 · 종류 C2~C5, C-F, S, AG, CG, C-P, C-PE, C-P2, C-P2E 및 W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신설>	**1. 과세**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별첨 1 참조>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E, C-E, C-PE, C-P2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r><td>C-P</td><td>BZ443</td></tr><tr><td>C-PE</td><td>BZ444</td></tr><tr><td>C-P2</td><td>BZ445</td></tr><tr><td>C-P2E</td><td>BZ446</td></tr><tr><td>W</td><td>BZ447</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E, C-E, C-PE, C-P2E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r><td>C-P</td><td>BZ443</td></tr><tr><td>C-PE</td><td>BZ444</td></tr><tr><td>C-P2</td><td>BZ445</td></tr><tr><td>C-P2E</td><td>BZ446</td></tr><tr><td>W</td><td>BZ447</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1월 02일
- 종류형 C-P, C-PE, C-P2, C-P2E, W 수익증권 신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P, C-PE, C-P2, C-P2E, W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
<종류 C-P, C-PE, C-P2, C-P2E, W 신설>
></td>
<td>
<table>
<tr><td></td><td>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C-P2</td><td>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r><td>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td></tr>
</table>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
<별첨 2 참조>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C-PE, C-P2, C-P2E, W 신설>
></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
<tr><td>C-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
<td></td>
<td>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추가)</td>
<td>
<table>
<tr><td></td><td>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C-P2</td><td>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r><td>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td></tr>
</table>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부담비율</th><th rowspan="2">비고
(부담시기)</th></tr>
<tr><th>종류 C-P, C-PE, C-P2, C-P2E, W</th></tr>
<tr><td>환매
수수료</td><td>-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td><td>환매시</td></tr>
</table>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 C-P, C-PE, C-P2, C-P2E, W 신설 ></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 C-PE, C-P2, C-P2E, W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환매수수료 :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90 일미만: 이익금의 30%</td>
</tr>
</table>

<table>
<tr>
<td></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 C-P, C-PE, C-P2, C-P2E, W 신설 >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종류 C-P, C-PE, C-P2, C-P2E, W 신설 ></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
<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
<tr><td>종류 C-P</td><td>171</td><td>539</td><td>945</td><td>2,150</td></tr>
<tr><td>종류 C-PE</td><td>138</td><td>436</td><td>763</td><td>1,738</td></tr>
<tr><td>종류 C-P2</td><td>161</td><td>507</td><td>888</td><td>2,021</td></tr>
<tr><td>종류 C-P2E</td><td>133</td><td>419</td><td>735</td><td>1,673</td></tr>
<tr><td>종류 W</td><td>105</td><td>332</td><td>582</td><td>1,325</td></tr>
</table>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
<신설></td>
<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별첨 4 참조>
(순차적 연번 변경)</td>
</tr>
<tr>
<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
</tr>
</table>

<별첨 1>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의 제외)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종류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C-P	없음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연1.668%	연0.64%
C-PE			연1.348%	연0.32%
C-P2			연1.568%	연0.54%
C-P2E			연1.298%	연0.27%
W			연1.028%	연0.00%

<별첨 3>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종류 C-P2E	종류 W
운용	0.9500%	0.9500%	0.9500%	0.9500%	0.9500%
판매	0.6400%	0.3200%	0.5400%	0.2700%	0.0000%
신탁업자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관리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보수합계	1.6680%	1.3480%	1.5680%	1.2980%	1.6680%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및비용	1.6680%	1.3480%	1.5680%	1.2980%	1.0280%
증권거래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별첨 4>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의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2, C-P2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형 C-P, C-PE, C-P2, C-P2E, S, W 신설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1월 0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P : BZ448 종류 C-PE : BZ449 종류 C-P2 : BZ450 종류 C-P2E :BZ451 종류 S : BZ453 종류 W : BZ452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1.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2. 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3. 종류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14. 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5. 종류 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16.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1. 종류 C-P 수익증권 12. 종류 C-PE 수익증권 13. 종류 C-P2 수익증권 14. 종류 C-P2E 수익증권 15. 종류 S 수익증권 16. 종류 W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C-P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C-P2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종류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20
제40조 (판매수수료)	<신설>	④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S 후취판매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⑤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4항제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보수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AG 및 C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d>보수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AG, CG, C-P, C-PE, C-P2, C-P2E, S, W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3.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td><td>1. 과세
<신설></td><td>1. 과세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table>
<tr><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납입요건</td><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td></tr>
<tr><td>수령요건</td><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tr>
<tr><td>세액공제</td><td>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td></tr>
</table>
</td></tr>
</table>

		<table><tr><td>**연금수령 시 과세**</td><td>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td></tr><tr><td>**분리과세 한도**</td><td>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의 제외)</td></tr><tr><td>**해지가산세**</td><td>없음</td></tr><tr><td>**부득이한 연금외수령**</td><td>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td></tr><tr><td>**부득이한 연금외수령 과세**</td><td>연금소득세 5.5 ~ 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td></tr><tr><td>**연금계좌 승계**</td><td>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td></tr></table> ※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r><td>C-P</td><td>BZ448</td></tr><tr><td>C-PE</td><td>BZ449</td></tr><tr><td>C-P2</td><td>BZ450</td></tr><tr><td>C-P2E</td><td>BZ451</td></tr><tr><td>S</td><td>BZ453</td></tr><tr><td>W</td><td>BZ452</td></tr></table>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tr><th>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table>

<table>
<tr><td></td><td></td><td><table>
<tr><td>C-P</td><td>BZ448</td></tr>
<tr><td>C-PE</td><td>BZ449</td></tr>
<tr><td>C-P2</td><td>BZ450</td></tr>
<tr><td>C-P2E</td><td>BZ451</td></tr>
<tr><td>S</td><td>BZ453</td></tr>
<tr><td>W</td><td>BZ452</td></tr>
</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1월 02일
- 종류형 C-P, C-PE, C-P2, C-P2E, W, S 수익증권 신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able>
<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
<tr><td>C-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C-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td></tr>
<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able>
<tr><td></td><td>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td></tr>
<tr><td>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td></tr>
<tr><td>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td></tr>
</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able>
<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
<tr><td>C-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able></td></tr>
</table>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W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 / C-PE / C-P2 / C-P2E / W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없음 종류 S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운용	0.20%	0.20%	0.20%
판매	0.80%	0.40%	0.70%
신탁업자	0.03%	0.03%	0.03%
일반관리	0.02%	0.02%	0.02%
보수합계	1.05%	0.65%	0.95%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및비용	1.05%	0.65%	0.95%
합성총보수및비용	2.05%	1.65%	1.95%
증권거래비용	실비	실비	실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C-P2E	종류 W	종류 S
운용	0.20%	0.20%	0.20%
판매	0.35%	0.00%	0.45%
신탁업자	0.03%	0.03%	0.03%
일반관리	0.02%	0.02%	0.02%
보수합계	0.60%	0.25%	0.70%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및비용	0.60%	0.25%	0.70%
합성총보수및비용	1.60%	1.25%	1.70%
증권거래비용	실비	실비	실비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P	210	662	1,161	2,643
종류 C-PE	169	533	934	2,127
종류 C-P2	200	630	1,104	2,514
종류	164	517	906	2,063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C-P2E</td><td></td><td></td><td></td><td></td></tr>
<tr><td>종류 W</td><td>128</td><td>404</td><td>708</td><td>1,611</td></tr>
<tr><td>종류 S</td><td>174</td><td>549</td><td>963</td><td>2,191</td></tr>
</table>
주 2) 종류 S 수익증권은 10 년 동안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별첨></td></tr>
<tr><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별첨>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의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2, C-P2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